

[]약국 []폐업
[]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[]휴업 신고서
[]의약품 판매업 []업무재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(다만, 약국 관련 신고는 7일 3일)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명칭	전화번호	
	소재지	등록번호	
신고내용	[]약국 (요양기관기호:) []의약품 판매업 []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(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) 년 월 일		
	휴업예정기간	업무재개 연월일(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) 년 월 일	
	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() (※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만 작성합니다)		
	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(주소) (전화번호)		
(※ 약국만 작성합니다)	휴업 또는 폐업 사유 (※ 신청대상 번호란 [] 에 "√" 표시)	01대표자 사망[] 02고령(건강상)[] 03학업목적[] 04경영상[] 05취업[] 06소재지 이전[] 07면허취소[] 08기타[]	

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·제2항, 제24조제1항·제2항 및 제41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,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·휴업·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약국개설등록증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)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※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※ 폐업신고의 경우에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약국 폐업 또는 휴업, 업무재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3항)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기안·결재	→	허가증 뒷면 기재	→	통보
신고인		처리기관: 시·군·구								